

외교적 방식에 의한 영토분쟁의 해결*

최 대 현**

<目 次>

I. 서론	IV.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결 방식의 활용
II. 영토분쟁의 특성과 종류	V. 결 론
III. 영토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방식의 특성	

I. 서론

영토분쟁은 각 당사국의 영토주권이라는 민감한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영토분쟁은 한 국가의 생존문제와 관련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국가의 자존심과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고, 그 만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토분쟁의 대부분은 과거의 부정확했던 국경문제로부터 연유한다. 제2차대전 이후에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다수의 신생국가들이 종래의 국경분쟁에 대해 새로운 분쟁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영토분쟁이 발생하였다.¹⁾ 이러한 영토분쟁에 내재된 역사성과 영토와 결부된

* 이 논문은 2003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백충현,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3권 제4호 (1982), p. 21. 제2차 대전 이후 영토분쟁의 발생이 증가한 이유로 i) 신생국들이 영토내에 실효적 권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인접국가와 충돌 가능성을 높였고, ii) 동일한 식민국가의 지배하에 있던 신생국 상호간에 지역분할에 관해 의견차를 보였으며, iii) 현대국가들은 원거리 국경지역에도 실효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보다 정확한 국경선 획정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iv) 국제기구의 발달로 약소국들도 권리주

국민의식은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국민감정을 쉽게 자극하게 되고 극도로 민감한 여론의 반응을 야기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토분쟁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러한 국민감정에 촉발되어 쉽게 심각한 분쟁으로, 극단적으로는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국경선은 국제법상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우선 국경선은 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범위의 한계를 정해준다.²⁾ 그 외에 국경선은 영토보전의 대상인 영토의 범위를 정해 주므로 한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선 군사행동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³⁾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국경분쟁의 해결은 이웃 국가간의 양자관계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리하여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들이 국경분쟁의 해결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의 대표적인 것들로 평화공존의 원칙,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원칙, 불침략원칙,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원칙 등이 있다.⁴⁾

이와 같은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쟁당사국들이 사실관계 가운데 자국에 유리한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고, 더욱이 영토분쟁을 자국의 위신과 명예가 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지역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없이 상징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분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이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토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안정적인 상황이 되게 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는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의 해결방식으로는 법적 해결방식과 외교적 해결방식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의한 해결 이외의 방식, 즉 외교적 해결방식, 또는 정치적 해결방식에 의한 영토분쟁의 해결에 한정하여 고찰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토분쟁의 특성과 종류를 살펴보고, 국제법상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외교적 해결 방식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한다. 그 후 이러한 방식들이 실제로 영토분쟁의 해결에 적용되어 이용된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장이 쉬워졌다는 상황의 출현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Evans Luard, "Frontier Dispute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in Evans Luard (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rontier Disputes* (Thames & Hudson, London, 1970) 7, pp. 12-13.

2) M. Bothe, "Boundaries", in R. Bernhardt (eds.),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 (Heidelberg, 1992), pp. 443-447.

3) *Ibid.*, p. 447.

4) Su Wei, "Confidence Building and Efficient Methods for Border Dispute Resolution", in J. Dahlitz (ed.), *Peaceful Resolution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 (United Nations, 1999) 113, p. 114.

II. 영토분쟁의 특성과 종류

1. 영토분쟁의 특성

영토분쟁은 국가영역주권의 귀속 또는 범위와 직결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토의 보전과 안정성을 열망하는 당사국 국민의 일반적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사국 국민은 영토에 대해 국민적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전은 쉽게 정치적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영토분쟁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토분쟁은 국제법 질서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종종 무력충돌의 대상이 되곤 한다. 또한 영토분쟁의 당사국은 영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제3자라 할지라도 분쟁당사국들이 다같이 수궁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파악과 해결방법의 제시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⁵⁾ 또한 국경분쟁의 이러한 민감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양자·다자 분쟁해결조약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선택조항의 운영과정에서는, 영토분쟁을 강제관할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영토분쟁은 주로 영토를 규율하는 국제법질서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영토의 취득권원 뿐만 아니라 국경선의 설정근거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의 차이가 영토의 안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영토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당사국은 기존의 국제법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영토의 변경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기존법질서의 부당함과 더불어 새로운 질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토변경에 관한 국제법규범의 변화요구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영토분쟁은 영토의 취득과 유지를 규율하는 국제법질서에 대한 도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해결은 엄격히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위신과 명예에 직결되므로 당사국은 무력에 호소해서라도 자국의 영토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의 기본질서는 영토주권의 일체성과 국경의 안정성에 기초하여 유지되는 측면이 많은데 이러한 영토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력충돌은 곧바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력충돌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무력충돌을 냉각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영토분쟁은 영토주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 뿐 아니라 때로는 무력충돌로 야기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

5)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pp. 1-8.

라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외교적 수단에 의한 영토분쟁해결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토분쟁은 다른 분쟁과 비교하여 일단 해결된 뒤에도 다시 재연되는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해결에 불만을 가졌던 당사국이 다시 새로운 분쟁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며, 당사국들의 편이나 주변사황에 의하여 잠재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분쟁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결내용의 하자나 흠결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영토분쟁이 수차례에 걸쳐 잠복과 발생을 거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⁶⁾

또한 영토분쟁은 국경의 지역별 생성배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지역별로 국경획정의 기준,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태도, 지역적 기구의 존부와 기능의 효율성, 지역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영토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신생국들은 영토·국경과 관련한 전통 국제법이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주권적 의사에 기초한 해결방식인 외교적 해결방식 즉 외교적 해결방식을 선호한다.

2. 영토분쟁의 종류

영토분쟁은 분쟁의 대상에 따라서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으로 나누어진다.

(1) 영유권 분쟁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권원(territorial title)에 관한 다툼 또는 영토주권의 행사 및 유지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영유권 분쟁은 영토적 청구(territorial claims)를 다루는 분쟁으로서 특히 당해 영토의 발견, 선점, 정복, 할양, 시효 등 권원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국제법규범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⁷⁾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유권 주장이 경합할 때 발생한다.⁸⁾ 그리하여 영유권 분쟁은 일 국가가 더 나은 권원을 이유로 타국의 특정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배제하려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

외관상 국경분쟁으로 보이는 분쟁이 실제로는 그 지역의 영토적 권원에 관한 다툼인 경우

6) 예컨대, 온두라스-니카라과 국경사건은 거의 1세기에 걸친 분쟁상태에서 다양한 외교적 해결방식이 동원되었었고 1906년 스페인왕의 중재판정, 동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룬 1960년 ICJ의 판결 및 Portillo de Teotecacinte 지역에 관한 혼합위원회의 중재판정 등 세 차례의 국제재판을 거쳐 안정적인 국경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7) A. O. Cukwurah,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niv. Press: Manchester, 1967), p. 6.

8) 백충현, *supra* note 1, p. 21.

가 많다. 일례로 영국, 아르헨티나, 칠레가 남극지역에 대한 주장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잠재적 분쟁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곳에서의 국경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지만, 그 핵심적 쟁점은 각국이 주장하는 지역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토적 권원’의 효력과 관련된 것이다.⁹⁾

(2) 국경분쟁

국경분쟁은 영토의 한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경을 확립하는 문서 외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거나 지상에 국경을 고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국경분쟁에서는 국경선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평가가 중시된다.¹⁰⁾

국경분쟁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경분쟁이 항상 이 네가지 중 하나의 상황에서 발생하고는 볼 수 없고, 때로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경분쟁으로는 i) 어떠한 국경선도 조약이나 기타에 의하여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ii) 국경선은 확정되었지만, 그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 iii) 당사국들이 국경선 확정의 근거로 드는 문서가 서로 상이한 데서 발생하는 분쟁, iv) 국경확정의 공식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적용시 地上에서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달라 발생하는 분쟁 등을 들 수 있다.¹¹⁾

첫 번째 부류의 국경분쟁은 국경선이 확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바가 없다는 의미의 분쟁이다. 이러한 부류의 분쟁은 19세기에 유럽국가들간에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의 국경선을 둘러싸고 많이 발생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북아프리카의 사막지역, 중동 및 남극지역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의 국경분쟁은 확정된 국경선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히 분쟁당사국간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종종 전쟁으로 치닫기도 한다. 종종 이러한 국경선 자체가 전쟁의 결과로 확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승국이 확정된 국경선에 대하여 패전국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법성이 없는 국경확정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남미국가들은 19세기에 ‘현상유지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을 받아들였고, 아프리카단결기구(OAU)도 1964년에 이 원칙을 수용한 바 있

9) F. M. Auburn, *Antarctic Law and Politics* (London: C Hurst & Co., 1982), Ch .2.

10) J.G. Merrills,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in Theory and Practice: Precedents Established", in J. Dahlitz (ed.), *Peaceful Resolution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 95 (United Nations, 1999), p. 97.

11) *Ibid.*, pp. 99-101.

다. 그러나 이 ‘현상유지의 법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경획정의 문제를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 법리는 국경획정에 관하여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리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분쟁은 더 이상 두 번째 부류의 분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 번째 부류의 분쟁은 당사국들이 국경획정의 법적 근거를 서로 상이하게 제시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1950년대 및 60년대에 중국과 인도간의 국경분쟁을 들 수 있다. 양국은 국경선이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양국은 서로 다른 문서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경선이 국경협정들에 의하여 형성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협정이 진정한 국경선을 확정하는 근거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부류의 분쟁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공식의 실제적용 과정에서 그 의미에 관한 이견의 존재로 발생하는 것이다. ICJ가 1992년 내린 판결인 ‘육지·도서 및 해양경계 사건’¹²⁾에서 엘살바도르와 혼두라스는 육지영토의 경계에 대하여 1821년의 *uti possidetis*선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였다. 198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Taba지역분쟁¹³⁾에서는 국경을 표시하는 몇몇 기둥의 위치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였고, Beagle해협사건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모호한 국경획정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부류의 분쟁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양국은 경계획정의 기초가 되는 공식에 관해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의미에 관하여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¹⁴⁾

(3)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간의 관계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상이한 고려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도 한다. 먼저 영유권 분쟁은 반드시 국경분쟁에 선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때 국경도 함께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국경분쟁은 영유권의 귀속이 결정된 뒤에도 발생할 수 있다. 1925년 PCIJ는 터키-이라크간 국경문제

12) Land, Island and Frontier Dispute,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92), p. 35; 이 사건에 대한 논평으로는 M. N. Shaw, Note, 42 *I.C.L.Q.* 929 (1993) 참조.

13) Boundary Dispute concerning the Taba Area, Arbitration Award, 1988, 27 *ILM.* 1421 (1988); 이 사건의 요약문은 83 *A.J.I.L.* 590 (1989) 참조.

14) 일단 국경획정의 공식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후에는 실제로 경계표시라는 기술적 작업만이 남는다. 즉 합의된 공식에 따라 지상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러한 작업은 법률가 보다는 주로 측량기술자 및 지리학자의 몫이 되는데, 다만 그 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경계표시는 또 다른 분쟁과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간의 사원사건이 그 예이다. Temple of Preah Vihear,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62), p. 6.

(Mosul 지역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¹⁵⁾ 국경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토에 관한 권원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경의 정확한 위치가 분쟁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국경이 근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권원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간의 상호관련성은 무시할 수 없다. 국경에 관한 결정은 영토적 권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경에 관한 증거는 영토적 권원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은 그 후에 국경분쟁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국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⁶⁾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특정분쟁의 성격이 양 분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최근의 ICJ에서의 리비아-차드 영토사건에서 보듯이,¹⁷⁾ 리비아는 양국간의 국경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동 분쟁은 영유권 분쟁이라고 주장한 반면, 차드는 이에 국경선은 1955년 리비아-프랑스간 조약으로 확정되었으므로 ICJ는 이를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ICJ는 차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 사건은 두 종류의 영토분쟁을 미리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영토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방식의 특성

1.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영토분쟁도 기본적으로는 국제분쟁이다. 이러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대해서 수많은 국제법 문서들은 국가에게 이를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1899년 및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 1902년 강제적 중재에 관한 협약(Treaty on Compulsory Arbitration), 국제연맹규약, 1923년 미주국가간 분쟁의 회피 또는 방지 조약(Treaty to Avoid or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15)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Treaty of Lausanne (Frontier between Turkey and Iraq), PCIJ Reports, Ser. B., No. 12 (1925), pp. 21-22.

16) J.G. Merrills, *supra* note 8, p. 98.

17) Territorial Dispute, Judgement, *ICJ Reports* (1994), p. 6; 이에 대한 commentary로는 G.J. Naldl, Note, 44 *I.C.L.Q.* 683 (1995) 참조.

American States, 일명 Gondra조약),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의정서, 1936년 주선 및 중개에 관한 미주간 조약(Inter-American Treaty on Good Offices and Mediation),¹⁸⁾ UN헌장,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원칙 선언¹⁹⁾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지역적인 국제법 문서로는 1948년 OAS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조약’(일명 the Pact of Bogotá), 1957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협약,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최종 의정서 등을 들 수 있다.²⁰⁾

이러한 문서들에 의하면 국가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²¹⁾ 그렇지만 분쟁의 당사국들은 그들이 합의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다른 평화적 수단에 합의하여 분쟁해결을 추구할 의무를 진다. 만일 이러한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고 그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의 일방은 이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²²⁾

이와 같이 국제분쟁의 당사국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를 그들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분쟁당사국들은 분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분쟁당사국들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의무를 지는 것뿐이지, 그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갖지 못한 국제공동체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한계로서 국내법체제와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²³⁾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루는 국제법적 제도는 국제‘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분쟁의 정의에 관하여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마브로마티스 팔레스타인 양허권 사건에서 ‘두 당사자 간의 법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불일치, 법적인 견해에 관한 충돌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충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²⁴⁾

18) G. Pope Atkins, *Latin America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2nd ed.(Boulder, CO: Westview Press, 1989), pp. 226-228.

19) 1970년 선언에서는 분쟁당사국들은 조기에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 분쟁의 상황과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여기는 평화적 수단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총회결의 제2625(XXV)호.

20) M.N. Shaw, *International Law*, 5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3), pp. 917-918.

21) UN헌장 제33조 제1항과 Manila선언 Section I (3) 및 (10) 참조.

22) UN헌장 제37조 제1항 참조.

23) M.N. Shaw, *supra* note 20, p. 916.

24)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Jurisdiction) case*, PCIJ, Series A, No. 2 (1924), p. 11.

2.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상기 국제법 문서들은 체약국에게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국제법을 통한 분쟁해결에 사용되는 평화적 수단들을 열거하고 있다.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가장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UN헌장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²⁵⁾ 이러한 방식에는 외교적 수단 뿐 아니라 법적 수단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외교적 수단으로는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지역적 기관 및 약정의 이용, UN 또는 기타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등이 있다. 여기에는 주선이 제외되어 있다.²⁶⁾ OAS헌장 제24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서 “직접교섭, 주선, 중재, 심사 및 조정, 사법적 해결, 중재, 분쟁당사국들이 특별히 합의하는 수단”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법적 해결과 중재를 제외하면 전부 외교적 해결수단이며, UN헌장과는 달리 주선도 명시하고 있다. 위 평화적 해결수단 중 법적 수단을 제외한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을 소위 ‘외교적 해결방식’이라 일컫는다.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평화적 조치로서 외교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때로는 군사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토분쟁은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유형의 조치가 취해지는가에 따라 분쟁이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과 분쟁당사국간의 장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토분쟁을 무력사용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우 당사국간에 장기적인 적대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며,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의 압도적 승리는 어렵게 된다. 한편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당사국간에 장기적인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²⁷⁾ 따라서 영토분쟁의 경우 당사국의 지도자들이 장기적인 분쟁의 뒷에 걸리기 전에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초기의 외교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영토분쟁의 해결은 가능한 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후에 취소될 가능성이 감소된다.²⁸⁾

외교적 수단과 법적 수단의 주요한 차이점은 분쟁해결과정에서 제3자가 관여하는 정도이다.²⁹⁾ 외교적 분쟁해결수단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주로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반해,

25)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UN헌장 제33조 제1항.

26) 국가간 우호관계원칙선언의 토의과정에서는 주선을 분쟁해결수단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관행상 중재와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기타 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M. Sohov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Oceana: New York, 1972). p. 141.

27) John A. Vasquez, *The War Puzzl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pp. 146-152.

28) Paul K. Huth, *Standing Your Ground: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pp. 189-192.

29) Richard B. Bilder, “International Third Party Dispute Settlement”, 17 *Denver Journal of*

법적 해결수단은 제3자에게 분쟁해결을 결정짓는 통제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³⁰⁾

이러한 두 가지 수단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이 결합되어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기 위해서는 동 분쟁에 있어서 당해지역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필요성, 입장, 국민감정, 당해영토에 부여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교적 해결방식의 특성

(1) 직접교섭

직접교섭은 외교적 교섭을 말하는데, 당사자들간의 직접교섭은 종종 영토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³¹⁾ 확실히 실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선호되는 방식이다.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른 해결수단보다 직접교섭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직접교섭은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교섭의 결과로 얻은 해결책은 당사자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직접교섭은 다른 수단보다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이다.³²⁾

직접교섭은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에게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담보할 뿐 아니라 분쟁의 최종 해결시까지 결정과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허용하며, 당사국간의 이해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법규범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직접교섭은 당사국간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장래에 분쟁의 재발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³³⁾

그러나 직접교섭은 당사국들에게 합의에 도달할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직접교섭은 관련 이익의 복잡성, 상대국의 압력행사, 정치적 요소, 기타 분쟁외적 고려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좌우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흔히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은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타협안의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교섭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타협의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영토는 그 본래적인 전략적 또는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심리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⁴⁾ 이 경우에는 영토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되기

International Law & Policy 471 (1989), pp. 480-481.

30) *Ibid.*

31) Louis B. Sohn, "The Future of Dispute Settlement", in R. St. J. Macdonald & Douglas M. Johnston (eds.),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1121 (Kluwer: Dordrecht, 1986), p. 1125.

32) Richard B. Bilder,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1 *Emory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1 (1986), p. 22 및 note 36.

33) A. O. Cukwurah, *supra* note 7, pp. 148-149.

보다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견해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선호될 것이다.

직접교섭은 당사국간에 보다 정확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하고, 해결방안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때로는 단점을 노정할 수도 있다. 직접교섭의 단점은 당사국간의 힘의 역학관계 즉 군사력이 교섭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교섭은 당사자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경우 곧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2) 주선과 중개

주선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교섭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중개는 제3자가 교섭의 과정에 참여하여 교섭의 성공을 위해 해결방안 또는 조건까지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개념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주선과 중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은 양자교섭이 결렬되거나 개시될 수 없을 때 주선과 중개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제3자의 개입을 원하기도 한다. 중개자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교섭을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특별히 해결을 위한 제안까지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중개에 대하여 좀 더 우호적이고 좀 더 쉽게 합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해결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직접교섭과 마찬가지로 당사국들은 영토분쟁의 최종적 해결에 도달할 의무나 그러한 해결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중개자도 양 당사국의 이익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으며, 스스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타협안을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다. 더욱이 중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여론에 맞게 체면치레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해석하고 정치적으로는 수락가능한 해결안을 찾도록 하는 자유를 준다.³⁶⁾

중개는 영토분쟁에 있어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종종 영토분쟁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적·영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³⁷⁾ 그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영토분쟁에 관련된 국가는 통상 그러한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다같이 이로울 정도로 되었을 때에만 일정한 형태의 교섭을 행할 것에 합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적대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계속이 양국간의 관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면 일정한 형태의 교섭이 가능할 것이다.

34) E. Luard, *supra* note 1, p. 7.

35) Naomi Schwiesow, "Mediation", in E. Luard (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rontier Disputes* 141, *supra* note 1, p. 142.

36) *Ibid*

37) *Infra* note 53 및 본문 참조.

따라서 중개는 그러한 적대관계가 거의 군사적 충돌에까지 이르거나 무력충돌을 이미 야기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³⁸⁾ 그 결과, 중개는 주된 목적이 영토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에 평화적 관계를 회복시켜 적대관계를 회피 또는 종식시키는 것인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양 당사자가 무력충돌을 중지한다면, 그들을 동 영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실심사

사실심사는 심사위원회라는 국제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심사의 역할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심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사실관계의 발견에 한정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법적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배상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이를 당사국들에게 보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권한 또는 역할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어떤 측면에서는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으로서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경분쟁의 경우 사실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의 명확화는 그것 자체로 국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중립적인 제3자로 구성되는 국제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분쟁의 법적 쟁점 또는 배상책임의 소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만을 수행하는 것은 일방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다.³⁹⁾

(4) 조정

조정은 조정위원회라는 국제기관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 목적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교섭에 의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은 최종적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방당사자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게 하는 재판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조정은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체면을 세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정은 i) 당사자간에 비공식적 의견 교환을 도와주고, ii)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직접교섭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iii) 양 당사자에게 의견 개진을

38) N. Schwiesow, *supra* note 35, p. 165.

39) Lisa D. Toohey, "Compensation for Agent Orange Damage in Vietnam", 13 *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Dispute Resolution* 287 (2005), p. 316.

수월하게 하고 이들이 개진한 의견을 정리하며 공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에 조력하며, iv) 양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관계를 지지하며, 감정을 안정화·통제시키고 충돌의 가능성을 희석시키며, v) 문제해결에 분석적으로 개입하며, vi) 효율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낸다.⁴⁰⁾

그 밖에 조정의 장점은 조정이라는 방식이 단독적으로 영토분쟁의 해결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사법적 해결방식과 결합하여 조정-중재재판 방식과 같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복합적인 분쟁해결방식은 물론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교섭, 중개, 심사 상호간 및 이들 방식과 사법적 해결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의 분쟁해결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영토분쟁의 특성에 맞게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만족스럽고 적절한 분쟁해결방식들을 혼합하여 복합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복합적인 방식은 당사국들이 미리 하나의 방식이 실패하거나 해결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들에게 특히 선호될 수 있다.

(5) 국제기구의 이용

영토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UN이나 지역적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정한 유형의 영토분쟁은 정치적 국제기구가 더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이 경우 정치적 국제기구는 그 분쟁을 실제로 해결한다기 보다는 그 현안을 다룸으로써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국제기구는 분쟁당사국들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거나 분쟁당사국들에게 직접교섭을 권장하거나 법적 수단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쿠웨이트-이라크 국경 위원회의 역할은 실제로 국경을 획정하였다는 의미에서 다소 예외적이다.

IV.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결 방식의 활용

영토분쟁의 외교적 해결방식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식이 그대로 활용된다. 다만 영토분쟁은 법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 있어 좀 더 주의를 요할 뿐이다.⁴¹⁾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40) Howard Raiffa, "Analytical Barriers", in Kenneth J. Arrow et al. (eds.), *Barrier to Conflict Resolution* 132 (W.W. Norton: New York, 1995), p. 143.

41) A. O. Cukwurah, *supra* note 7, p. 230.

방식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사국간의 상호역학관계, 제3자의 영향력, 분쟁의 중요성, 해결방안의 성격, 주변상황 등 다양하다.⁴²⁾ 그동안 선택되어 왔던 외교적 해결방식은 주로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영토의 안정성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왔다.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방식은 각각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 때때로 그 효용성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방식만이 모든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택된 외교적 방식이 효과적이라면 당사자들은 그 분쟁의 특성, 그 영토의 가치(전략적, 경제적 또는 상징적 가치) 및 당사자들에게 타협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당사자들이 선택된 외교적 방식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제3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³⁾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외교적 방식에 의하여 실제로 영토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1. 직접교섭

직접교섭은 당사국들 스스로의 주도에 의하여 개시되기도 하고 제3자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교섭은 일반적으로 당해 영토에 대해 부여된 가치의 중요성과 국민감정이 결합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영토분쟁이 분쟁당사국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되는 사례도 있다. 직접교섭은 다른 분쟁 해결수단과 결합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간의 직접교섭 자체가 영토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중국과 그 이웃 국가간의 영토분쟁과 미국과 멕시코간의 영토분쟁은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었다.⁴⁴⁾

먼저 중국과 그 인접국인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간의 국경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이 국경분쟁은 원래는 중국과 3개국의 식민통치국이었던 영국간에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었으나 직접교섭을 통하여 전통적 관습선에 따라 양 당사국간의 영토교환 또는 국경재조정이 이루어져 원만하게 해결되었다.⁴⁵⁾ 이러한 결과는 이들 3개국이 i)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ii) 분쟁지역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 iii) 전통적 관습선이라는 공통의 국경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42) L.L. Randolph, *Third-Party Settlement of Dispute in Theory and Practice* (Oceana: New York, 1973), pp. 36-38.

43) Carla S. Copeland, "The Use of Arbitration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 67 *Fordham Law Review* 3073 (1999), p. 3107.

44) Evan Luard, *supra* note 1, p. 24.

45) A.O. Cukwurah, *supra* note 7, pp. 143-148 참조.

칠레-페루간의 Tacna-Arica 지역 국경분쟁도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었다. 1883년 Ancón 조약은 1879년 칠레-페루전쟁으로 칠레가 점령한 Tacna-Arica 지역의 귀속과 관련하여 칠레에 의한 10년간의 통치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귀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칠레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상당기간 늦추어 분쟁지역을 칠레영토화하였고, 주민투표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도 이견이 존재하여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포기하고 직접교섭에 의행 Tacna 지역을 페루에, Arica 지역을 칠레에 각각 귀속시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⁴⁶⁾ 이러한 교섭의 성공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 분쟁과 같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적용범규범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에 직접교섭은 타협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데 적합한 분쟁해결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교섭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분쟁당사국들의 상호 양보에 의한 타협이 중요하다. 즉 분쟁당사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초한 신뢰의 존재와 영토분쟁이 당사국들간의 기본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선 및 중개

주선과 마찬가지로 중개는 기본적으로 교섭의 연장이다. 그러나 중개자는 각 당사자의 제안을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기도 하며 해석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안을 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조정과 구별되는 점은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해결안의 제시를 비공식적으로 하거나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서 하지만, 조정은 독립적인 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양자의 차이가 없어져 가는 경향에 있다.⁴⁷⁾

주선과 중개의 주요한 기능은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외에 중재재판을 유도하는 것인데, 영토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예는 드물다. 그러나 주선 및 중개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형태의 근거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영향력 있는 제3국의 개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⁴⁸⁾

중개는 개인,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 - UN 또는 지역적 기구 - 에 의하여 수행된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1982년 Falkland섬 침공과 관련된 사건에서 처음에는 미국의 Alexander Haig가 중개를 하기로 하였으나 후에 UN사무총장인 Cuéllar가 주선을 행하였

46) Norman L. Hill, *Claims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Oxford Univ. Press: Oxford, 1945), p. 199.

47) J.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4th ed. (Cambridge, 2005), p. 28.

48) 백충현, *supra* note 1, p. 25.

다.⁴⁹⁾ 이는 아르헨티나 침략이 이미 UN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UN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무력의 위협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Buraimi 지역 분쟁에서는 미국이 국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⁵⁰⁾

1978년 Beagle 해협에 관한 중재판정⁵¹⁾의 이행을 둘러싸고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교황은 Antonio Samoré 추기경을 중개자로 내세워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교황의 중개는 중재판정의 이행거부로 발생한 영토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포클랜드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개입의 동기는 간단하다. 두 카톨릭 국가간의 전쟁 위기에 대하여 지난 5세기 동안 남미 문제에 전통적으로 관여해온 교황의 중개는 종교적·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Beagle 해협분쟁의 해결에서 시사하는 바는 영토분쟁의 경우 본질적으로 법률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이 큰 영토분쟁인 경우에는 엄격한 법에 의한 재판보다는 당사국 이해의 조정을 꾀하는 중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Beagle 해협사건 이외에도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이 실패로 돌아간 영토분쟁이 중개를 통하여 해결된 사례는 더 있다. Teotecacinte 국경분쟁에 있어서 Honduras는 1906년 중재판정을 수락한 반면, Nicaragua는 거부하여 무력충돌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나, 미국의 중개에 의하여 무력충돌이 방지되었을 뿐 아니라 1931년 양국간의 조약이 체결되게 하였다.⁵²⁾ 17세기 이래

49) L. Freedman & V. Gamba-Stonehouse, *Signals of War: The Falkland Conflict of 1982* (London, 1990), Chs. 12-18 참조.

50) N. Schwiesow, *supra* note 35, pp. 143, 149.

51) Beagle Channel Award (1977), 52 *International Law Report* 91. 이 분쟁은 Beagle 해협상의 3개 도서의 귀속을 둘러싼 아르헨티나-칠레간 국경분쟁에 대하여 1977년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77년 중재판정이 i)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왜곡하였고, ii) 중재회부사항 이외의 문제를 다루었고, iii) 판정이유상의 모순이 있고, iv) 조약해석상의 오류가 있으며, v) 지리적·역사적 사실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였고, vi) 당사국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불공평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동 판정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중재판정을 거부한 실제 이유는 이 판정이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 '해양의 원칙'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도서의 영유권 문제를 넘어 인접 해양관할권의 경계확정과 남극에 대한 영유권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는 데 있었다. D. W. Greig, "The Beagle Channel Arbitration", 7 *A.Y.I.L.* 332 (1976-77), pp. 380-384. 그리하여 양국은 혼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행하였으나, 이들 도서에 관한 영유권 문제의 해결여부에 관한 이견으로 권능에 관한 합의조차도 확보하지 못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무력충돌의 위험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왕과 OAS의 중개가 시도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교황 John Paul 2세의 중개 제의가 양국에 의해 수락되었다. 그리하여 1979년 Samoré 추기경이 중개자로 임명되어 양국과 교섭한 끝에 각각 중재회부와 무력행사금지, 군대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두 개의 몬테비데오 선언이 체결되었다. 이를 토대로 중개가 개시되어 1980년 칠레의 PNL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고, Beagle 해협수역은 양국 공유의 비무장수역으로 하며, PNL도서의 인접수역내에 있는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개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 중개안은 칠레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거부함으로써 당시에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후 이를 기초로 교황청에 의한 중개노력이 계속된 결과 1984년 양국간의 평화후조조약이 체결되어 Beagle 해협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식민지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Honduras-Guatemala의 국경분쟁은 1세기에 걸쳐 직접교섭, 중재, 사법재판이 실패하자, 양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중개에 나섰다. 1966년 중개자 Webster는 영국령 Honduras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하는 대신 이 지역에서의 과테말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중개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개는 영토분쟁에 있어서 분쟁당사국간의 정전의 교섭 및 감시, 군대철수를 통하여 당사국간의 감정을 냉각시키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1976년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Kashmir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초기에 소련의 중개는 이미 양국간의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이 분쟁에서 소련의 중개는 소련의 남부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성을 회복하고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소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련의 중개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였다.⁵³⁾ 이 분쟁에서 소련의 중개는 정전만을 성립시키고 원상회복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였다.

주선·중개는 영토분쟁의 당사국들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식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영토분쟁의 경우 분쟁해결방식 자체가 분쟁해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합의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Rann of Kutch 분쟁과 Buraimi 오아시스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방식에, Preah Vihear 사원분쟁,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및 니카라과-온두라스 국경분쟁에서는 ICJ에의 회부를 합의하는 데 중개는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5개 사건 중 Buraimi 오아시스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⁵⁴⁾

한편 주선·중개는 제한된 경우이지만 영토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1세기에 걸친 에콰도르-페루 국경분쟁은 1941년 양국간의 전쟁 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4개국에 의한 중개를 통하여 1942년 Rio de Janeiro의정서가 체결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동 의정서는 1936년 직접교섭 당시의 현상(status quo)을 기준으로 분쟁지역을 양국에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Amazon강으로의 출구를 잃게 되는 에콰도르에게 Amazon강에서의 통항권을 보장함으로써 양국간의 이해를 절충하였다.⁵⁵⁾ 에콰도르는 동 의정서의 체결로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온 Oriente 지역의 1/3과 Amazon강으로의 출구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분쟁이 양국의 이해에 합치되도록 해결되었다는 일관적 감정이 형성되었다.⁵⁶⁾

52) 백충현, *supra* note 1, pp. 25-26 참조.

53) J.G. Merrills, *supra* note 47, p. 42.

54) Buraimi 사건에서는 사우디 중재관의 공정성 상실을 이유로 영국 중재관이 사임함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55) A.J. Day,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Longman: London, 1982), pp. 370-371.

56) G. Maier, "The Boundary Dispute between Ecuador and Peru", 63 *A.J.I.L.* 28 (1969), pp. 43-44. 그리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i) 에콰도르가 1941년 전쟁에서 패하여 페루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점, ii) 해결의 결과가 현상유지에 근거한 점, iii) 에콰도르에게 Amazon강에의 통항권이 확보된 점 등이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브라질-콜롬비아-페루 3개국간의 국경분쟁도 미국의 중개에 의하여 브라질의 자유통항권 보장과 콜롬비아의 Tabatinga 지역 양보로 해결되었다.⁵⁷⁾

영국-이란간 Bahrain분쟁은 UN사무총장의 중개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이 분쟁은 Bahrain의 독립과 관련하여 이란이 역사적 권리와 영국측 문서를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란은 이 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UN사무총장이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집·정리한 것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영국이 이에 동의하여 UN사무총장이 중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UN안전보장이사회가 Bahrain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독립을 원한다는 UN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란이 UN사무총장에게 중개를 맡긴 것은 이 분쟁에서 법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UN의 개입으로 영유권주장을 포기하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이었다.⁵⁸⁾

이 외에도 중개는 영토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동 분쟁을 동결시키기도 한다. 중개는 때때로 분쟁당사국들의 이해대립이 첨예하여 이해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현상의 동결을 통하여 분쟁의 악화를 막기도 한다. 케냐-소말리아 국경분쟁의 경우, OAU 후원하에 Kaunda 잠비아 대통령의 중개에 의하여 1967년 Arusha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재개되고 분쟁해결을 담당할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정은 실제로 양국간의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협정 규정의 모호성에 근거하여 현재의 국경분쟁을 잠재화시키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⁵⁹⁾

3. 심사

영토분쟁이 심사에 회부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에게 탄력적인 대응 기회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나 에콰도르는 1960년대에 들어와 Riode Janeiro 의정서가 일반적으로 강요된 조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국경분쟁을 부활시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A.J. Day, *supra* note 41, p. 371.

57) Note, "Settlement of Boundary Controversies between Brazil, Colombia and Peru", 19 *A.J.I.L.* (1925), pp. 579-580.

58) R.K. Ramazani, "The Settlement of the Bahrain Dispute", 12 *Iran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1972), pp. 10-13.

59) A.J. Day, *supra* note 55, p. 134. 소말리아는 케냐북부 국경지대와 관련된 국경분쟁을 장래의 교섭사항으로 남겨 놓을 것으로 해석한 반면, 케냐는 협정이 OAU헌장 제3조를 인용한 것을 근거로 국경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간주함으로써 쌍방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켰다.

영토분쟁에서 활용되는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탄력적 대응기회를 제공하고 간편하게 개시되고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주선이나 중개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심사는 국경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제소건수도 적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한 예도 드물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7년 Honduras와 Nicaragua간, 1958년 Panama와 쿠바간, 1960년 Venezuela와 도미니카 공화국간의 국경침입사건에 관한 UN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⁶⁰⁾

4. 조정

조정도 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정의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분쟁당사국들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실제로 활용되는 빈도수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심사보다는 조정에 의한 영토분쟁 해결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

제2차대전 후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재점령으로 발생한 태국-프랑스 국경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조정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양국은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1946년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영국, 페루, 프랑스, 태국의 외교관 5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정은 일본의 군사점령기간 중 태국과 인도차이나간의 국경을 조정한 1941년 동경협약을 무효로 하고 전쟁전의 현상을 분쟁당사국간의 교섭의 기초로 삼도록 규정하였다. 태국은 전쟁전의 국경이 인종적, 경제적, 지리적 고려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위원회는 현상의 유지를 근거로 하여 관련 국경조약의 개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태국은 그의 수락을 거부하였다.⁶¹⁾ 결국 조정위원회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을 시도함에 있어서 조약의 효력이라는 엄격한 법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조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후에 태국정부가 국경변경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영토분쟁의 해결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파라과이간 Chaco지역 국경분쟁도 조정에 의하여 해결이 시도된 사례에 속한다. 양국은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1929년 미국,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쿠바에서 각 1인과 분쟁당사국에서 각 2인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파라과이의 침공사실에 관한 심사와 국경충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결안을 제시하도록 임

60) Nissim Bar-Yaacov, *The Handling of International Disputes by Means of Inquiry* (Oxford Univ. Press: Oxford, 1974), pp. 122-123.

61) W.I. Shore, *Fact-Finding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Oceana: New York, 1970), p. 33.

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국경분쟁 자체에 대해서는 조정을 행한 권능이 부여되지 않았다.⁶²⁾ 그리하여 조정위원회는 무력충돌에 따른 책임의 상호면제, 무력충돌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 외교관계의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의정서를 체결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⁶³⁾ 그 후 조정위원회는 권한의 위임이 없었던 국경문제에 관하여도 양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결안을 준비하였으나 양 당사국의 상이한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중재조약을 성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분쟁회부의 범위와 중재준칙에 관한 분쟁당사국간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국경충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되었다.⁶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이 영토분쟁의 해결방식으로 활용되는 데에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조약법, 해양법 등 다자조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강제적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을 독립된 제3자적 국제기관에 맡겨 객관적 평가를 받되 분쟁당사국의 주권과 통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을 가진 조정방식이 영토분쟁의 해결에 활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특히 조정위원회라는 국제기관에 의한 비구속적 권고를 활용하는 것은 영토분쟁이 자칫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해 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5. 국제기구의 이용

정치적 국제기구가 영토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는 주로 분쟁 당사자들의 견해를 조정하고, 직접교섭을 행하게 하거나,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수단에 회부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때에 따라서는 분쟁당사자들이 해결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기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리비아-차드 국경분쟁에 있어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는 양 당사자에게 ICJ에 동 분쟁을 회부할 것을 권장하였고,⁶⁵⁾ 그 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유엔의 감시단(Observer Group)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판결이 이행되는 것을 도와주었다.⁶⁶⁾

62) L.H. Woolsey, "The Bolivia-Paraguay Dispute", 23 *A.J.I.L.* 110 (1929), p. 112.

63) *Ibid.*, p. 123.

64) *Ibid.*, pp. 124-125.

65) S. G. Amoo & I. W. Zartman, "Mediation by Regional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in Chad", in J. Bercovitch & J. Z. Rubin, *Med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2), p. 131

66) Secretary-General's Report Proposing the Creation of the Observer Group과 이와 관련된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910 & 915에 대해서는 33 *I.L.M.* 785 (1994) 참조.

6. 외교적 방식과 법적 방식의 혼용

일정한 상황에서는 영토분쟁이 외교적 해결방식과 법적 해결방식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어 해결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차드-리비아 국경분쟁의 해결을 들 수 있다. 1973년에 분쟁이 발생한 후 양국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무력충돌이 있어 왔는데, 양국은 1989년 8월 31일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골격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Territorial Dispute)을 체결하여 1년 이내에 평화적 해결을 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치적인 방식으로 체결이 되지 않자, 양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간의 교섭후에 분쟁은 양국이 각각 골격협정의 통고라는 방식으로 ICJ에 이 분쟁을 회부하였다.⁶⁷⁾ ICJ의 결정은 1994년 2월 3일에 내려졌는데, ICJ는 양국간의 국경이 1955년 8월 10일의 프랑스-리비아 조약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차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양국은 협정을 체결하여 리비아가 1994년 5월 30일까지 Aouzou 지구로부터 철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은 또한 UN감시단에 의한 철군감독도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ICJ의 결정에 따라 공통의 국경선을 확정할 합동전문가팀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994년 5월 4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UN감시단이 Aouzou Strip Observer Group(UNASOG)을 설치하고 40일안에 감시단 및 지원인원을 배치할 것을 허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⁶⁸⁾ 그 해 5월 30일 리비아와 차드는 리비아의 행정요원 및 군대의 철수가 UNASOG의 감독하에 양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⁶⁹⁾ 이에 따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UNASOG의 임무를 종료하였다.⁷⁰⁾

V. 결 론

영토분쟁은 국제분쟁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쟁중의 한 부류에 속한다.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영토의 고유한 가치도 문제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 당사국들의 자존심과 명예 및

67) 리비아는 1990년 8월 31일, 차드는 1990년 9월 30일에 통고하였다. the Libya-Chad Case, ICJ Reports (1994), pp. 6. 14.

6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15 (1994).

69) 이 공동선언문에는 UNASOG의 수석 군사감시관이 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S/1994/672 (1994. 6. 6), 100 *ILR* 111 (1994).

70) *Ibid.*, p. 114.

국민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간단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해결방식으로는 법적 해결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때로는 확실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법적 방식에 의한 해결 시 법에 의한 해결이므로 자국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에게 돌아올 비난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방식은 어느 일방에게 권리를 전부 귀속시킴으로써 제로섬(zero-sum)게임과 같은 양상을 초래하며, 패자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자국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다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분쟁해결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방식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외교적 방식은 분쟁당사국들의 주도하에 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할 타협의 여지를 남겨둘 뿐 아니라 분쟁해결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제어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해결결과도 양국의 요구를 다같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win-win 게임이 될 여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방식의 선택은 영토분쟁의 내용, 영토분쟁의 해결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지, 동 분쟁의 재판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외적 요소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 A.J. Day,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Longman: London, 1982).
- Allcock, J. B. et al. (eds.), *Border and Territorial Disputes* (Longman: Harlow, 1992).
- A.O. Cukwurah, ,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Press: Manchester, 1967). U n i v .
- Biger, G. (ed.),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Boundaries* (Facts on File: New York, 1995).
- Brownlie, I., *African Boundaries: A Legal and Diplomatic Encyclopedia* (Hurst: London, for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79).
- F.M. Auburn, *Antarctic Law and Politics* (London: C Hurst & Co., 1982).
- G.Pope Atkins, *Latin America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2n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9).
- J.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4th ed. (Cambridge, 2005).
- John A. Vasquez, *The War Puzzl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 L.Freedman & V. Gamba-Stonehouse, *Signals of War: The Falkland Conflict of 1982* (London, 1990).
- L.L. Randolph, *Third-Party Settlement of Dispute in Theory and Practice* (Oceana: New York, 1973).
- M.N. Shaw, *International Law*, 5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3).
- M.Sohov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Oceana: New York, 1972).
- Nissim Bar-Yaacov, *The Handling of International Disputes by Means of Inquiry* (Oxford Press: Oxford, 1974). U n i v .
- N.L. Hill, *Claims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Oxford Univ. Press: Oxford, 1945).
- P. K. Huth, *Standing Your Ground: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 W.I. Shore, *Fact-Finding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Oceana: New York, 1970).
- 백충현,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3권 제4호 (1982).
- C.S. Copeland, "The Use of Arbitration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 67 *Fordham Law* 3073 (1999). Review
- D.J. Dzurek, "South East Asian Offshore Oil Dispute", *Ocean Yearbook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D.W. Greig, "The Beagle Channel Arbitration", 7 *A.Y.I.L.* 332 (1976-77).
- E. Luard, "Frontier Dispute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in Evans Luard (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rontier Disputes* (Thames & Hudson, London, 1970).
- G. Maier, "The Boundary Dispute between Ecuador and Peru", 63 *A.J.I.L.* 28 (1969).
- G.J. Naldl, Note, 44 *I.C.L.Q.* 683 (1995).
- H. Raiffa, "Analytical Barriers", in Kenneth J. Arrow et al. (eds.), *Barrier to Conflict Resolution 132* (W.W. Norton: New York, 1995).
- J.G. Merrills,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in Theory and in Practice: Precedents Established", in J. Dahlitz (ed.), *Peaceful Resolution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 (United Nations, 1999). (United
- J.R.V. Prescott, "The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Maritime Boundary", *Yearbook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Ocean
- L.H. Woolsey, "The Bolivia-Paraguay Dispute", 23 *A.J.I.L.* 110 (1929).

- Lisa D. Toohy, "Compensation for Agent Orange Damage in Vietnam", 13 *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Dispute Resolution* 287 (2005).
- Louis B. Sohn, "The Future of Dispute Settlement", in R. St. J. Macdonald & Douglas M. Johnston (eds.),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Kluwer: Dordrecht, 1986).
- M.Bothe, "Boundaries", in R. Bernhardt (eds.),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 (Heidelberg, 1992).
- Naomi Schwiesow, "Mediation", in E. Luard (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rontier Disputes* (Thames & Hudson, London, 1970).
- Richard B. Bilder,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1 *Emory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1 (1986).
- , "International Third Party Dispute Settlement", 17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471 (1989).
- R.K. Ramazani, "The Settlement of the Bahrain Dispute", 12 *Iran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1972).
- R.W.. Smith and B.L. Thomas, *Island Dispute and The Law of Sea: An Examination of Sovereign and Delimitation Dispute*, *Maritime Briefing* 24 (4) (Durham: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1998).
- S.G. Amoo & I. W. Zartman, "Mediation by Regional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f Unity (OAU) in Chad", in J. Bercovitch & J. Z. Rubin, *Med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2).
- Su Wei, "Confidence Building and Efficient Methods for Border Dispute Resolution", in J. (ed.), *Peaceful Resolution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 (United Nations, 1999).
- T. McDorman and A. Chircop, "The Resolution of Maritime disputes" in E. Gold (ed.), *Maritime Affairs: A World Handbook* (2nd edn.) (Oceans Institute of Canada, Harlow: Longman, 1991).
-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Jurisdiction) case, PCIJ, Series A, No. 2 (1924).
- Beagle Channel Award, 52 *International Law Report* 91, (1977).
- Boundary Dispute concerning the Taba Area, Arbitration Award, 1988, 27 *I.L.M.* 1421 (1988).
- Land, Island and Frontier Dispute,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92).
- Libya-Chad Case, ICJ Reports (1994).
- Territorial Dispute, Judgement, ICJ Reports (1994).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15 (1994).
-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S/1994/672 (1994. 6. 6), 100 *ILR* 111 (1994).

<Abstract>

Settl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through
Diplomatic Methods

Choi, Tae Hyun